

# 학생생활관 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학생생활관(기숙사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예원예술대학교 학생생활관 (이하 “생활관”이라 한다) 이라 한다.

**제3조(개사기간)** 생활관의 개사기간은 학사일정에 의한 수업기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개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.

**제4조(이용제한)** 생활관 시설물의 이용은 관생에 한한다.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활관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.

**제5조(관생활동)** 관생의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 및 학문의 연구와 교양함양을 위한 활동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.

**제6조(관생수칙)** 생활관장은 관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생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제2장 조직 및 직무

**제7조(조직)** 생활관에 다음의 조직을 둘 수 있다.

1. 생활관장 : 1명
2. 팀장 : 1명 <개정 2022.1.24>
3. 사감 : 약간명
4. 직원 : 약간명
5. 영양사 : 1명
6. 생활지도조교 : 약간명
7. 용원(관리인 및 조리인, 미화인) : 약간명

**제8조(생활관장)** ① 생활관장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단 겸직이 가능하다.<개정 2022.1.24>

② 생활관장은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관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을 관리 운영한다.

**제9조(사감)** 사감은 생활관장의 지시를 받아 관생들의 생활을 지도, 감독한다.<개정 2016.11.17>

**제10조(팀장)** ① <개정 2012.12.21.><삭제 2022.1.24>

② 팀장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소속직원의 직무를 감독한다.<개정 2022.1.24>

**제11조(사감회)** ① 생활관에는 생활관장, 팀장, 사감으로 구성하는 사감회의를 둔다.<개정 2022.1.24>

② 사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관생선발 기준 및 선발에 관한 사항
2. 관생징계에 관한 사항
3. 퇴사에 관한 사항
4. 운영위원회에 부의 할 사항
5.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**제12조(직원)** ① <삭제 2022.1.24>

② 직원은 팀장을 보좌하고, 행정업무와 식당운영 등 생활관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<개정 2022.1.24>

**제13조(생활지도조교)** ① <삭제 2022.1.24>

② 생활지도 조교의 대우는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며 관실을 제공한다.<개정 2016.11.17>

**제14조(용원)** ① 관리인은 생활관의 도난과 화재예방 관리, 수리 보수 기타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.

② 미화원은 생활관 내외의 청소업무를 담당한다.

③ 영양사 및 조리인은 생활관내 식당에서 식단작성 조리업무를 수행한다. 단, 외부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업무 관리한다.<개정 2016.11.17>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15조(운영위원회)** ① 생활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16조(구성)** 운영위원회는 생활관장, 팀장, 사감, 및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2.1.24>

**제17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18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규정의 개정
2. 세(수)칙의 제정 및 개정
3. 예산 및 결산
4. 관생납부금에 관한 사항
5.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

**제19조(회의)**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20조(간사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팀장이 되며, 팀장 유고시 생활관장이 지명하는 직원 1인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<개정 2012.12.21.><개정 2022.1.24>

### 제4장 입사자격 기준 및 퇴사

**제21조(입사자격)** ① 생활관 입사자격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, 전염성 질환이 없는 학생으로 선발한다. 다만 외국인은 사감회의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사할 수 있다.<개정 2016.11.17>

② 기타 입사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22조(관생선발)** ①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선발기간 중 모집공고에 따라 입사신청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12.21.><개정 2022.1.24>

② 생활관장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관생을 선발한다.

1. 성적우수자
2. 장애인·차상위계층인자<개정 2016.11.17>
3. 기타 사감회에서 인정한자
4. <삭제 2016.11.17>

③ 생활관장은 사감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.

④ 관생들의 다음 학기 입사희망자는 다음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일부 선발한다.<신설 2016.11.17>

**제23조(입사허가)** 생활관 입사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납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,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는 생활관 입사허가가 취소된다.

**제24조(입사기간)** ① 입사기간은 본교 학사일정에 의한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생활관 입사 시는 학기 초로하며, 여석이 있을 때는 신청자 중 사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로 입사를 허가한다.

**제25조(입사제한 및 퇴사처분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제한 및 퇴사 처분한다.

1.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
2. 기 퇴사 처분을 받은 자
3. 생활관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
4. 생활관 사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퇴사한 자
5. 전염성 질환 감염자
6. 휴학중인 자
7.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
8.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
9. 기타 생활관 관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자

**제26조(퇴사신고)** ① 관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결정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용물의 반납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하여야 한다.

② ①항의 기간 내에 퇴사하지 않은 자의 사물은 임의 조치한다.

## 제5장 재정

**제27조(회계)** <삭제 2022.1.24>

**제28조(재원)** ① 생활관의 운영 경비는 학교보조비, 관리운영비, 식비로 총당한다.<개정 2022.1.24>

② 기본재산시설 및 직원의 급료는 학교가 부담한다.

③ 생활관의 공공요금, 일반소모품, 용원의 급여는 관리운영비에서 부담한다.

④ 기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납부금 이외에 특별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**제29조(납부금)** ① 관생이 납부할 관리운영비, 식비는 따로 정한다.<개정 2016.11.17>

② 관리운영비, 식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11.17>

③ 학기 중 입사 시에는 관리운영비, 식비를 잔여일수에 대해 납부한다.<개정 2016.11.17>

**제30조(납입금의 용도)** 납입금은 다음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<삭제 2022.1.24>

2. 관리운영비 : 광열비, 난방비, 공공요금, 소모품, 영양사, 용원급여 등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

3. 식비 : 관생식비

**제31조(환불)** 휴학 및 질병치료, 징계 및 자의 등에 의해 퇴사할 시 당해 학기 잔여일수 관리운영비의 10%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과 식비를 환불한다. 단,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대체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해당기간에는 휴학 및 질병치료에 의한 퇴사자를 제외한 그 밖의 퇴사자에게는 환불해 주지 않는다.<개정 2016.11.17>

**제32조(예산과 결산)** ① 생활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생활관장은 매 회계연도 말 15일 이내에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납부금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연 1회이상 총장이 임명하는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## 제6장 징계

**제33조(징계)**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사처분 할 수 있다.

1. 제25조에 해당하는 자

2. 남학생이 여학생 생활관에 또는 여학생이 남학생 생활관에 허락 없이 출입한 자
3. 절도행위를 한 자
4. 허락 없이 타인의 물품을 사용한 자
5. 공공기물을 파손 한 자
6. 화재 위험물질을 실내에 반입한 자
7. 외출금지 시간을 어긴 자
8. 생활관 규정시간을 까닭 없이 지키지 않은 자
9. <삭제 2016.11.17>
10. 흡연, 음주, 고성방가, 소란 기타 경범죄에 속하는 행위를 한 자
11. 공동생활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자
12. 기타 학생신분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<신설 2016.11.17>

## 제7장 관생회

**제34조(관생회)** 생활관에는 관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관생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생회를 둔다.

1. <삭제 2022.1.24>
2. <삭제 2022.1.24>

**제35조(임무)** 관생회는 관생들의 학문탐구에 전력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계획하고 실천할 임무를 갖는다.

1. 면학분위기 조성
2. 사내생활의 질서유지 및 환경미화
3. 생활지도 및 관생친목

**제36조(운영)**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.

부 칙(2000. 3. 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1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11. 18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2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11. 17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1. 24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